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 운영위원회

수 신 학교운영위원

(경유)

제 목 2023년도 제12기 제60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 관련: 금산중학교-7328(2023.9.4.)
-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제60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60회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공고문 1부.

2. 제60회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 자료 1부.

동국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담당자 이세리 간사 이상랑 운영위원장 이경일

협조자

시 행 운영위 - 60 (2023. 9. 4.)

접수

우 576-962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7번지 /

전화 (063)543-0721 전송 (063)544-0721 /

/공개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 공고 제2023-20호

제60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공고

동국대사대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58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3. 9. 12.(화) 14:00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가.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4. 참고사항 :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인사 방청 가능

2023년 9월 4일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번호	12기-23년-60회-136호
----------	------------------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제안년월일 : 2023. 9. 12.

제 안 자 : 교장직무대리 임완진

소 관 : 행정실장 이상랑

1. 제안 이유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정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 3, 제111조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2인을 선임 하고자 제안함.

2. 위원회의 구성

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은 7인으로 구성

나. 구성단위별 정원

-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2인

-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중 2인

-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3인

3. 위원회의 운영 및 임기

가.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운영

나.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

4. 위원회의 기능

-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 “이라 한다)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불임 1.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개방이사의 추천 · 임원)

3.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정관 제24조, 24조의 2, 제24조의 3, 제111조



사립학교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법인 044-203-6931, 체산 6933, 기타 6932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7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제3절 기관

-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4. 11. 10., 1990. 4. 7., 1997. 1. 13., 1999. 8. 31.>>
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 7. 27.>>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 7. 27.>>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27.>>

부칙 <제16219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3호, 2019. 3. 19.,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7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 044-203-602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범인 044-203-6931, 재산 6933, 기타 6932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1. 5.]

부칙 <제29623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

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정관-

-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협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06.12.29>
- ② 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재직승려 9인, 기여는 재가 불자로서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한다.<개정 04.9.8, 15.08.18>
- ③ 조계종 재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법정기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00.7.4, 15.08.18>
- ④ 조계종 재직승려 이외의 이사 및 감사는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신설 15.08.18>
- ⑤ 제22조 제2항에 의한 개방이사, 제25조 제5항에 의한 감사 1인에 대해서는 제3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5.08.18>
- ⑥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개정 06.4.24, 10.10.21, 15.08.18>
- ⑦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15.08.18>
- ⑧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5.08.18>

-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06.12.29><개정 '07.8.22>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06.12.29><개정 '07.8.22>
- ③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대학평의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06.12.29>

- 제24조의3(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06.12.29><개정 ’07.8.22, 10.10.21>
- ②추천위원은 7인으로 하고, 추천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06.12.29><개정 ’07.8.22>
1. 대학평의원회 위원 중 2인
 2.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2인
 3.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3인
- ③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1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10.10.21, ‘12.04.05>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신설 10.10.21>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0.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